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1. 26(금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12. 19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12. 20(화)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기획삼사실장)

- 군수와 군의회 의원·위원회,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 3항의 개정에 따라 의안을 발의 할때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과 제출절차를 규정하는 조례안 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군수 및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비용추계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
-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와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것으로

- 예산부족으로 발의된 의안이 사문화 되는 비효율적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건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부